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변우정 의원 외 8명

2. 제안이유

- WTO 및 FTA 등 최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농촌인력 감소로 농업기계화가 촉진되면서 농업기계구입에 따른 농가부채증대로 농업경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농업기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촌경쟁력제고는 물론 경영 내실화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3조)

- 지원대상 : 농업기계화선정기종 중 구입가격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농업인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농업인 중 기종별 사용 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동일 또는 유사기종의 농업기계
 - 동일세대 내 다른 농업인 명의의 농업기계 구입
 - 중고 농업기계
- 지원범위
 - 농업기계구입가격의 100분의 50이하(단 200만원 초과금지)
 - 보조금 및 융자금의 총액이 농업기계 가격의 90%이상 초과금지

-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안 제4조)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시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사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대별로 1대를 우선결정 하여야 함.
- 지급시기(안 제5조)
 - 농업기계 구입실적 확인 후 지급
- 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안 제6조)
 -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준용규정(안 제7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준용

4. 참고사항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제4조
- 농지법 제2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3조
- 주민등록법 제6조
-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WTO 및 FTA 등 최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농촌인력 감소로 농업기계화가 촉진되면서 농업기계구입에 따른 농가부채증대로 농업 경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농업기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촌경쟁력제고는 물론 경영 내실화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 주요내용으로는

- 100만원 이상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구입 가격의 100분의 50%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되, 농업인 또는 기계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환경을 생각하면 이번 조례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자치단체의 농업기계구입보조금이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 보조로 보아 협정에 위배된다는 외교통상부의 의견과, 허용보조로 보아 위배되지 않는다는 농림부의 의견을 종합할 때,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WTO 농업협정 위배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